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 박정현 · 이해식 · 정준호

이광희 · 장종태 · 박홍배

이연희 • 박지원 • 김현정

이기헌 • 이재정 • 민병덕

김 윤 · 신정훈 · 김한규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,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·면·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 거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·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자율방범 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의 목적 달성과 지역차원의 치안 이 익을 극대화 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4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국유·공유 재산의 대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 에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 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·조건 및 절차 등은

부 칙

해당 재산을 대부 · 사용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4조의2(국유・공유 재산의 대
	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
	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
	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
	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
	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
	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
	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
	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
	<u>에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</u>
	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
	<u>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와
	중앙회등에 국유·공유 재산을
	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
	하는 경우 그 내용・조건 및
	절차 등은 해당 재산을 대부ㆍ
	사용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
	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
	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.